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8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타사업과 명칭이 유사하여 사업추진시 혼란이 있고, 사업내용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명칭 변경(안 제3조제1항)

- “긴급구호비 지원”을 “특별생계비 지원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3조, 4조)

## 3. 주요토의과제

“해당없음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 
관한 조례 제3조 (지원내용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: 2010.10.14~11.3(제출된 의견 없음)
- (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0.11.11)
- (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(4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긴급구호비 지원”을 “특별생계비 지원”으로  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 
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부교육  
지원청 교육장”으로 하고, “보훈단체장”을 “보훈단체의 장”으로 하  
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루어 졌는지”를 “이루어졌는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1. 「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서부교육청”을 “서부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제1호 중 “서부교육청”을 “서부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」 일  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서부교육청”을 “서부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긴급구호비 지원</u></p> <p>6.~10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<u>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장, 학교장,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, 보훈단체장</u>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<u>이루어졌는지</u>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내용) ①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특별생계비 지원</u></p> <p>6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.....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</p> <p>..... <u>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, 보훈단체의 장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.....</p> <p>..... <u>이루어졌는지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